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49
----------	-----

2024. 4. 2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4.)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현행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맞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1인가구의 고립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인가구 지원사업 내용 추가(안 제9조1항8호 신설)

나. 시설 이전 및 추가 등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별표]의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안 제10조제2항)

다.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11조 삭제, 기존 제12조~제16조를 제11조~제15조로 개정)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8. ~ 2024. 3.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가. 1인 가구 지원사업 내용 추가(안 제9조제1항제8호 신설)

- 구청장은 본 조례 제9조(지원사업)제1항에 따라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같은 8가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집행부는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노화, 질병, 실업, 장애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경우 사회적 환경변화에 취약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임.
- 특히 1인 가구의 특성상 가족구성원 간 돌봄서비스 단절을 지역 사회의 유대 관계로 대처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사업 집행에 있어서 ‘1인 가구’는 가족 형태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 고립가구로 간주하는 등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별표 삭제(안 제10조제2항)

- 현행 조례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아래와 같이 별표로 명시하고 있는 바, 시설을 이전하거나 명칭 등이 바뀔 경우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집행부는 조례 관리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를 삭제하고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고시’로 전환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바, 이는 입법기술상 재량선택의 문제라고 하겠음.

시설의 명칭과 위치(제10조제2항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 2층

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 조항 삭제(안 제11조)

- 현행 조례는 제11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제9조에서 명시한 1인 가구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같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 제11조(시설의 기능)는 제10조제1항과 중복된 규정이라고 하겠음.
- 집행부는 중복된 조항인 안 제11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이는 조례의 체계적합성 원칙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4.)

- 질 의 : 1인가구 커뮤니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가
- 답 변 :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아님

- 질 의 : 제9조의 지원사원 조문이 있어서 제11조 시설의 기능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
- 답 변 : 포괄적으로 내용의 중복으로 판단하여 제11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조항이 유지되어도 조례 집행 및 시설 운용상 문제가 없어 조항 유지도 가능함

7. 토론 요지

- 구청장 고시 사항으로 시설의 기능까지 규정하고 현행 조문에서 삭제하려던 조문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49호

발의일자 : 2024. 4. 24.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잦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 규정 대신 구청장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현실에 적합하게 추가하도록 조문을 수정함

2. 수정내용

- 시설의 기능까지 구청장 고시 사항으로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명칭과 위치는”을 “명칭·위치 및 기능은”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1조 삭제안은 현행과 같이 한다.

제11조(시설의 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
3. 주민 소모임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 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8. (생 략)</p> <p>② (생 략)</p>	<p>제9조(지원사업) ①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 략)</p> <p>②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와 같다.</u></p>	<p>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현 행과 같음)</p> <p>② ----- <u>구청장</u> <u>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개정안과 같음)</p> <p>② <u>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구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u>제11조(시설의 기능) 시설의 기능은</u></p>	<p><u><삭 제></u></p>	<p>(현행과 같음)</p>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

3. 주민 소모임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 제16조 (생략)

제11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의 명칭과 위치(제10조 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0%;">연번</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40%;">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td> <td>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 2층</td> </tr> </tbody> </table>	연번	명 칭	위 치	1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 2층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연번	명 칭	위 치						
1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 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8. (생 략)</p> <p>② (생 략)</p>	<p>제9조(지원사업) ①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 략)</p> <p>② <u>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u></p>	<p>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p>

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의 명칭과 위치(제10조 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0%;">연번</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40%;">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td> <td>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 2층</td> </tr> </tbody> </table>	연번	명 칭	위 치	1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 2층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삭 제></p>
연번	명 칭	위 치					
1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 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9
----------	-----

제출연월일 : 2024. 4. 12.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복지정책과

1. 제안이유

현행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맞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1인가구의 고립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인가구 지원사업 내용 추가(안 제9조1항8호 신설)

나. 시설 이전 및 추가 등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별표]의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안 제10조제2항)

다.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11조 삭제, 기존 제12조~제16조를 제11조~제15조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8. ~ 2024. 3.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제10조제2항 중 “별표와 같다”를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8. (생 략)</p> <p>② (생 략)</p> <p>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 략)</p> <p>②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와 같다.</u></p> <p><u>제11조(시설의 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u></p> <p>2. <u>맞춤형 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u></p> <p>3. <u>주민 소모임 운영</u></p> <p>4. <u>그 밖에 구청장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제12조 ~ 제16조 (생 략)</u></p>	<p>제9조(지원사업) ①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u><삭 제></u></p> <p><u>제11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시설의 명칭과 위치(제10조 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0%;">연번</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40%;">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td> <td>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 2층</td> </tr> </tbody> </table>	연번	명 칭	위 치	1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 2층	<p><삭 제></p>
연번	명 칭	위 치					
1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 2층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1인가구 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1인가구 지원사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1인가구커뮤니티 센터 운영	457,880	457,880	457,880	457,880	457,880	2,289,400
	소계(b)	457,880	457,880	457,880	457,880	457,880	2,289,400
□ 총 비용(a-b)		-457,880	-457,880	-457,880	-457,880	-457,880	-2,289,400

4. 재원조달 방안 : 연도별 사업예산 편성(시·구비)
 -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시비 보조금(100,000천원)
5. 작성자 : 복지정책과 사회7급 최요섭(02-3423-577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인건비	249,310	249,310	249,310	249,310	249,310	1,246,550
	사업비	91,100	91,100	91,100	91,100	91,100	455,500
	운영비	117,470	117,470	117,470	117,470	117,470	587,350
합 계		457,880	457,880	457,880	457,880	457,880	2,289,400